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27호서식] <개정 2012.2.22>

지급보증서

신청인	대상구분	보훈번호
	성명	생년월일(성별)
	주소	전화번호
지급보증내역	지급보증기간	부터 까지
	지급보증금액	
	대부종류	
대부재산표시	소재지(지목, 면적)	
매도자 인적사항	성명	생년월일
	계좌번호	
지급보증 내용	귀하가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대부금 지급신청 후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대부절차를 완료하고 채권서류를 제출하면 지급보증기간 내에 대부금을 지급할 것임을 보증합니다. 이 경우 대부재산의 매도인이 이 증서를 가지고 채무자와 함께 우리 보훈(지)청에 나오시면 위 금액을 직접 매도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.	

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지급보증서를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지방보훈청장

보 훈 지 청 장 직인

기안자(직위/직급) 명 검토자(직위/직급) 서명 결재권자(직위/직급) 서명
협조자(직위/직급) 서명
시행 처리과명-일련번호(시행일자) 접수 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
우 주소 / 홈페이지 주소
전화 ( ) 전송 ( ) /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/ 공개구분

210mm×297mm[백상지 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